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불법촬영물에 대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임시차단 근거 마련 >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79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임시조치 후 심의<br>요청 ..... | 3  |
| 2. 벌칙 조항 .....                                 | 11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태선의원 등 18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9. 12.

다. 회부연월일 : 2024. 9. 13.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은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함)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특성상, 유통 및 확산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선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

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 Ⅲ. 검토의견

#### 1.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임시조치 후 심의요청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5제5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 ④ (생략)<br><br><신설> |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 ④ (현행과 같음)<br><br>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 |

| 현행                                                  | 개정안                                                                                                                                                                                                                                                                    |
|-----------------------------------------------------|------------------------------------------------------------------------------------------------------------------------------------------------------------------------------------------------------------------------------------------------------------------------|
| <p>&lt;신설&gt;</p> <p>&lt;신설&gt;</p> <p>⑤·⑥ (생략)</p> | <p>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그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의결한 후 심의를 요청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조치의무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⑧·⑨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p> |

## □ 개 요

###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sup>1)</sup>는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

- 1)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sup>2)</sup>는 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되, 시행령에서는 임시적 차단 조치 규정이 없이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는 규정만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조치의무사업자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22조의5제5항)

---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2) 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③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의결한 후 심의를 요청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 조치의무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검토사항

○ 개정안의 임시조치는 피촬영자의 더 큰 피해(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임시조치가 해제되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되므로 피촬영자의 인격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보호 필요성을 중시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인터넷의 특성상 빠르게 정보가 확산되고 디지털성범죄물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범죄 초기에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sup>3)</sup> 및 제44조의3<sup>4)</sup>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

3)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각 호의 ‘불법촬영물등’은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바, 실제로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피촬영자의 인격권 등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음.

○ 다만, 표현의 자유 및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식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히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로 의심된다고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사업자로서는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관련 정보에 대해 임시차단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4)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또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3항에서는 임시적 차단 조치 규정이 없이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는 규정만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조치의무사업자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의무조항인지 재량조항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사업자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무조건적으로 사업자에게 임시차단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음.

- 무조건적으로 임시차단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라면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야 하나, 본 개정안은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사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17) 대한 21대 국회 과방위 검토보고서에서도 “법문상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지 여부는 조치의무사업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으로, 사업자가 임시차단조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그리고, 개정안의 내용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4조의3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 조성’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sup>5)</su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해야 할 사항들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임시조치 후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특성상, 단 한 번의 유통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바, 신속하게 이뤄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촬영물등 심의 소요기간 중에도 사업자가 해당 정보의 유통 및 확산 가능성을

---

5)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소화시킬 실익이 있어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본 개정안은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법률 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높일 수 있으며, 현행 법령과의 중복규제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시차단 여부는 사업자의 선택사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에도 사업자가 임시차단 조치를 무조건 시행해야 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2. 벌칙 조항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따른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유통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항을 벌칙의 예외조항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 현행                                                                                                                                                                                                                     | 개정안                                                                                                                                                                 |
|------------------------------------------------------------------------------------------------------------------------------------------------------------------------------------------------------------------------|---------------------------------------------------------------------------------------------------------------------------------------------------------------------|
|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5조의2(벌칙) -----<br>-----<br>-----<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1의2.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다만, 불법촬영물등을 인식한 경우 <u>지체</u>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의2. 제22조의5제1항 또는 제7항 -----<br>-----<br>-----<br>-----.<br>-----<br><u>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거나 지체</u> -----<br>-----<br>-----<br>-----<br>-----<br>-----. |

|                |                    |
|----------------|--------------------|
| 1의3. ~ 5. (생략) | 1의3. ~ 5. (현행과 같음) |
|----------------|--------------------|

□ 검토사항

- 개정안은 신설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임시조치의무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벌칙과 함께 예외사항을 두려는 것으로, 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항을 벌칙 예외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해 보이며, 안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신설 여부에 따라 정리되어야 할 내용임.

|              |
|--------------|
| 문 의 처        |
| 02)6788-5225 |